

대일 버섯가공식품 수출시 제약 및 통관 유의사항

○ 버섯가공식품의 대일수출시 제약사항

- 버섯가공식품은 일반적인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일본수입 검역시 특별히 제한 품목은 아니나 각 공정에 따른 가열여부, 제품의 첨가물 성분 등에 따른 식품위생법상의 사용금지 성분인지의 확인이 필요

(상세내역 판단을 위해서는 성분표, 가공공정표 첨부하여 자문 필요)

- 원료버섯의 품종명, 학명 등 기재 필요
- 신선버섯의 경우 과거 종묘권 시비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료버섯에 대한 품종권 확보 여부 사전 확인 필요
- 해당품목의 대일수출이 확정된 경우 각 품목의 성분표 및 가공공정표 등을 구비하여 사용첨가물의 적정성 여부, 수입자라벨 표기사항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 필요

○ 해당 품목의 신속한 검역통관을 위한 방법

-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하는 한국내 검사기관에서 사전 성분검사 실시하여 동 시험검사증을 일본 도착시 검역소에 제출함으로써 일본내 별도 검사없이 신속 통관 가능한 제도가 있으므로 이용 추천(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)
- 일본검역소에서는 제품성분 및 공정표를 보고 검사항목 및 검사여부를 판단하므로 수출이 정해진 시점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

※ 검사기관 리스트는 별첨 참조